

● 필요성

1. **민사소송의 증가추세** - 소비자 권리의식 강화로 가해자에 대해 손해 배상책임청구나 민사소송 제기 증가추세 / 손해배상액규모의 고액화
2. **피해자의 구제수단** - 가해자에게 재력이 없어 피해자를 신속하고 충분 하게 구제할수 없을때 배상 책임보험으로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
3. **경영수행의 안정성** - 대형사고 발생시 사업주(피보험자)의 과중한 손해배상 부담을 덜어주며, 보험료납부로 세제혜택 가능
4. **소송업무의 대행** - 민사소송 제기시 소송업무대행으로 소송으로 인한 인력낭비 방지

● 보험가입대상

1. **제조업체** - 전기, 전자, 기계, 화학, 자동차, 소비재 등의 등의 제조업체
2. **서비스 업체** - 병원, 백화점, 일반빌딩임대업 및 음식점, 학원, 극장, 학교 등 비제조업 분야의 모든 사업주
3. **공사업체** - 일반빌딩 건축, 도로/교량 건설, 전기설비업, 기계장치업 등 도급계약에 의해 공사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업체
4. **기타업체** - 도로운송업, 여객선업, 유도선업, 체육시설업 등

● 보상하는 손해

1. 법률상의 손해배상금
2. 손해경감비용
3. 방어비용
4. 권리보전비용
5. 기타비용 - 소송발생시 공탁보증보험료

● 보상하지 않는 손해

1.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(*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함)
2. 전쟁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, 소요, 노동쟁의
3. 지진, 분화, 홍수, 해일등의 천재지변
4. 원자핵물질, 방사능 관련사고 (* 원자력보험의 담보대상)
5. 무체물에 입힌 손해 (* 에너지,상표권,특허권의 침해등 무형의 자산에 입힌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)
6. 계약서상 가중된 손해배상책임
7. 공해물질의 배출,유출로 인한 오염사고 (*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오염배상책임은 오염사고 담보 추가특별약관으로 담보가능)
8. 피보험자가 소유,사용,임차하거나 보호,관리,통제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(*재물보험으로 가입 - 화재보험, 동산종합보험, 조립보험 등)
9.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 (* 산재보험 및 사용자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)
10. 자동차, 선박, 항공기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(*자동차보험 등으로 담보)
11.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(* 행정처분임)
12. 전무직업상의 배상책임 (* 의료과실,건축설계상의 과실등의 면책)
13. 기타 면책조항 (* 해당약관에 기재)